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행정법원”을 “행정법원,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회생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 10

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울회생법원	서울특별시

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[별표 10]

회생법원의 관할구역

고등법원	회생법원	관할구역
서울	서울	서울특별시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법원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을 서울특별시로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**황 교 안** 인

2016년 12월 27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홍 윤 식
장 관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14470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종류”를 “7종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회생법원

제3조제3항 중 “행정법원”을 “행정법원·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·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”을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”을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가정법원 사무국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”을 “가정법원 사무국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, 회생법원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호 중 “가정법원 합의부”를 “가정법원 합의부, 회생법원 합의부”로 한다.

제3편에 제6장(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회생법원

제40조의5(회생법원장)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.

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
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0조의6(부)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.

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40조의7(합의부의 심판권)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
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2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3.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·기피사건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
4.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행정법원장”을 “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. 다만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.

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,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**황 교 안** 인

2016년 12월 27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장관 (법무부 소관) **홍 윤 식**

◉법률 제14471호

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(仲裁)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재”란 「중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.
2. “중재산업”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(審理)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,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.
3. “분쟁해결시설”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,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중재산업 진흥기반”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, 전문 인력, 법령, 제도, 연구, 홍보 등을 말한다.

제3조(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